

교육과정 심의운영위원회 규정(4-4-7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29조에 의거 교육과정심의위원회(이하 '위원회' 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부총장, 대외협력부총장, 처장, 산학협력단장 및 단과대학 학장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총장이 되며, 간사는 교무팀장이 된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소집 및 의결)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교육과정의 제정, 개정, 폐지에 관한 사항
- ②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- ③ 기타 교육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

제6조(회의보고)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수행 내용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 기타 사항은 교육과정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199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04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8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개정 규정은 2019년 01월 28일부터 시행한다.(전면개정)